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유관기관 임대목적으로 건축중인 ○○군 ○○○ 증축 등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군

훈 계 대 상 자 울산광역시 ○○○○○○국 ○○○○과 지방○○○○○ ○○○
(전 ○○군 ○○○○과)

내 용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울산광역시 ○
○○군 ○○○○과에서 ‘○○군 ○○○ 건립공사’ 감독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울산광역시 ○○군(○○○○과)에서는 1979년에 건축된 기존청사가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 또한 협소하고 기계설비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청사 신축을 추진
하였다.

1. 유관기관 임대목적으로 부적정하게 증축(1개층, 9층→10층)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기록○○○기
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종이기
록물은 1만권당 99m²를 확보하고 기록○○○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청사 건립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에 대한 법적기준을 확보하여야 했다.

위 관서에서는 2014. 5. 22. ○○○○○ 설계공모 공고문에 건축연면적 22,578㎡, 지상10층 이하로 공고하였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설계 지침서의 주요 세부 시설계획에 ‘기록관은 30만권이상 기록물을 보관 가능한 서가와 문서 수발실을 구성한다.’라고 하고 기록관면적을 2,500㎡로 법적의무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임대공간 또한 [표2]와 같이 확보하도록 하여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공간을 배치하였다.

[표2] 설계공모 시부터 ○○○○○ 임대업자 선정 현황

입주업체	용도	설계 공모시 확보 면적(㎡, 지하1,2층)	현재사용수익허가 면적(㎡, 지상10층)	사용료(천원)
소계		2,601	1,144.9	115,619
○○ ○○군청 출장소	군금고	450	219.5	20,877
새마을○○○○회 ○○군지회	사무실	80	102.8	무상(법제4조)
○○○○○○ ○○군 협의회	사무실	60	102.8	무상(법제4조)
○○○○자문○○회의 ○○군지회	사무실	60	102.8	무상(영제30조)
한국○○○○○○ ○○군지부	사무실	60	102.8	무상(법제2조)
○○본부	사무실	70		
○○경영인 ○○군 연합회	사무실	60	64.7	4,097
○○군 ○○회	사무실	130	205.7	13,015
공무원 및 상용노조사무실	사무실	140		
○○군○○○○센터	사무실	140	145.4	9,199
○○군 ○○○○협의체	사무실	53	98.4	6,226
기타 임대시설	사무실	1,298		

그런데 2015. 6. 26. 건축 실시설계 준공 시에는 복도, 화장실, 기계실, 공조실 등이 미포함되어 청사의 전체 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기록관실 면적을

1,489㎡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 공고문과 다르게 변경하여 준공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6. 11. 8. 건립청사 회의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8층 전산실과 통신실 등을 지하 1층으로 이동배치 하고 지하 1층의 기록관실은 실시설계 준공내용과 다르게 490.5㎡(1,489㎡ → 998.5㎡)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과에서는 2016. 10. 26.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보다 151.5㎡(법적기준 1,150㎡ → 998.5㎡) 미달되어 법적기준 면적인 1,150㎡ 이상을 확보하여 달라고 ○○○○과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6. 11. 8. 유관단체에서 임대시설요구가 증가되고, 공공기록물 법적기준 미달 된다는 사유를 들어 10층을 증축하여 지하 임대공간을 10층으로 이동시킨 후 그 공간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활용한다는 군수 방침을 받아 설계변경(증액 12억원 상당)을 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7. 1. 2. 신청사 내 유관기관·단체 임대사무실 수요조사를 각 실과에 통보하여 조사한 결과 5개과(○○○○과, ○○○○과, ○○○과, ○○○○과, ○○○○과) 12개 사회단체가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8개 단체만 입주시켰으며, 조사 당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114개 유관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입주희망조사를 하지 않고 청사를 자주 방문하거나 사전에 요청한 특정단체만 ○○○○과로 통보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록관 법적기준 면적을 확보한다는 사유와 추후 부족한 사무실공간을 미리 확보한다는 사유로 12억원 상당(9층 → 10층, 1개 층 증축)을 증액

하여 설계변경하고, ○○군 사회단체 유관기관 114개 기관(2018. 2. 3. 기준) 중 9개의 특정 유관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입주시킴으로서 명백한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청사 준공 후 건축물대장에도 특정 사회단체 유관기관을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다.

2. ○○ ○○실 기준 면적을 초과 건축하여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실 집무공간외 부속공간(비서실, 접견실, 회의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99㎡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속공간 중 회의실은 단체장의 집무공간과 부속공간이 연결되어 출입이 가능한 공간 또는 일반직원이 자유롭게 사용이 제한되는 공간은 ○○실 사용면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설계당시 집무공간과 부속공간을 포함하여 99㎡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부당하게 집무공간과 부속공간을 포함하여 242.7㎡를 배치하여 법적기준을 143.7㎡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다.

3. ○○ 신축비용 비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사업계획, 설계내역, 계약방법, 설계변경사유, 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과)에서는 2016. 11. 8. 설계변경(9층→10층, 증액 12억원 상당) 단계와 준공단계에서는 공개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담당자가 자주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신축비용, 설계변경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미공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초과 사용한 ○○실면적을 적의 검토하여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